

[별첨 1] 제 2 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현행	개정	사유
제 1 조 (상호) 본 회사는 "해마푸드서비스 주식회사"라고 칭한다. 영문으로는 "Haimarrow Food Service Co., Ltd." (또는 "Haimarrow")라 표기한다.	제 1 조 (상호) 본 회사는 "주식회사 맘스터치앤컴퍼니"(또는 "맘스터치")라고 칭한다. 영문으로는 "MOM'S TOUCH&Co." (또는 "MOM'S TOUCH")라 표기한다.	상호 변경
제 4 조 (광고방법) 본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haimarrow.co.kr)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제 4 조 (광고방법) 본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momstouchandco.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상호 변경에 따른 회사 홈페이지 주소 변경
제 8 조의 2 (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 8 조의 2 (주식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무등록대상이 아닌 주식등에 대해서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제 12 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2 조 (신주의 동등배당)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동등배당 원칙을 명시
제 16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③ (생략) <주석 신설>	제 16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③ (현행과 같음) ※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등을 전자등록한 경우 주주명부 폐쇄기간의 설정이 불필요하므로 기준일 제도만으로 운영할 수도 있음.	주석 신설
제 17 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제 17 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는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 12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신설
제 35 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와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③ (생략)	제 35 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이사 선임에 관한 조문 정비
<신설>	제 35 조의 2 (감사의 선임 및 해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 해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감사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조문 정비

	<p>③ <u>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 386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u></p> <p>④ <u>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u></p> <p>⑤ <u>제 3 항, 제 4 항의 감사인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u></p>	
<p>제 50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p> <p>① 본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은 정기주주총회 회의의 6 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재무상태표</p> <p>2. 손익계산서</p> <p>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 및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p> <p>② (생략)</p> <p>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회의 1 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주석 신설></p> <p>④~⑦ (생략)</p>	<p>제 50 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p> <p>① <u>본 회사의 대표이사(사장)은 정기주주총회 회의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 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p> <p>1. 재무상태표</p> <p>2. 손익계산서</p> <p>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 및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 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 <u>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6 주 전(연결재무제표는 4 주 전)까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함.</u></p> <p>※ <u>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부감사인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보고서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1 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보고서 제출 시 (외부감사인인) "감사보고서"와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필수로 첨부하여야 함.</u></p> <p>④~⑦ (현행과 같음)</p>	<p>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문 정비</p>
<p>제 54 조 (중간배당)</p> <p>①~③ (생략)</p> <p>④ <u>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 1 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 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 1 항의 기준일 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최근 제 1 항의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u></p> <p>⑤ <u>제 9 조의 우선주식에 대한 분기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u></p>	<p>제 54 조 (중간배당)</p> <p>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u>제 1 항의 중간배당은 중간배당 기준일 전에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한다.</u></p> <p>⑤ <u>제 9 조의 우선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u></p>	<p>중간배당에 대한 동등배당 원칙을 명시</p>
<p><신설></p>	<p>부칙</p> <p>제 1 조 (개정) 이 정관은 2021 년 3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p> <p>제 2 조(감사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 35 조의 2 의 신설규정(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p> <p>제 3 조(감사 해임에 관한 적용례) 제 35 조의 2 의 신설규정(해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p>	<p>부칙 신설</p>

[별첨 2] 제 3 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 3-1 호 의안 : 사내이사 김동전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주요약력·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동전	1977.01.23	2015~현재 케이엘앤파트너스(주) 부사장 2009~2015 삼성전자(주) 무선사업부 차장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영학 석사 연세대학교 사회학 학사	최대주주의 사내이사, 케이엘해마로 사모투자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인 케이엘앤파트너스(주)의 부사장	이사회

나. 후보자의 해당법인과의 최근 3 년간 거래내역·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해당법인과의 최근 3 년간 거래내역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김동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제 3-2 호 의안 : 사외이사 강호인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주요약력·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강호인	1957.12.03	2021~현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2020~현재 법무법인(유) 울촌 상임고문 2015~2017 국토교통부 장관 2013~2015 조달청 청장 2012~2013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1984~2012 기획재정부 차관보 캠브리지대학교 경제학 석사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나. 후보자의 해당법인과의 최근 3 년간 거래내역·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해당법인과의 최근 3 년간 거래내역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강호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별첨 3] 제 4 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구분	전기	당기
이사의 수(사외이사 수)	6 명(2 명)	6 명(2 명)
보수총액 도는 최고한도액	3.68 억원	30 억원

[별첨 4] 제 5 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구분	전기	당기
감사의 수	1 명	1 명
보수총액 도는 최고한도액	0.6 억원	2 억원

[별첨 5] 제 6 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부여방법, 행사가격, 행사기간 및 기타 조건

성명	직위(직책)	주식의종류	주식수	부여방법	행사가격	행사기간
김홍석	전무(성장전략본부장)	보통주	200,000 주	차액보상형 (차액주식보상방식, 차액현금보상방식)	3,500 원	2023 년 3 월 29 일 ~ 2027 년 12 월 31 일
문수현	이사(경영지원본부장)	보통주	142,857 주			
이경민	이사(기획실장)	보통주	142,857 주			
총 3 명	-	-	485,714 주			

(주 1) 매 회계연도 말 기준 회사가 별도로 정한 KPI 의 달성 정도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음. 주식매수선택권은 총 4 회차에 나누어 부여조건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며, 특정 연도의 부여조건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회차는 차기연도로顺延됨. KPI 달성여부는 이사회 승인사항으로, 행사 가능 여부를 심사하여 이사회에서 승인된 수량에 한하여 행사 할 수 있음.